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저성장 고령화 시대 노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2016. 10

C Contents

I.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현주소

II. 가입자 교육 개선 방향

I.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현주소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정의

- 가입자교육이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와 동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입자)에게 퇴직연금의 운영 상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
이 때 확정급여형(DB형) 또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음
-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 감사 결과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과태료)

① 제32조제2항, 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2조제2항: 사용자의 책무

제33조제5항: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가입자교육의 필요성

- 퇴직연금 가입자의 제도 이해와 금융투자 지식 수준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라 할 수 있는 만큼 가입자는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음
특히, 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의 본인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노후소득이 결정되므로 이러한 가입자 교육이 더욱 중요함

■ 퇴직연금제도별 가입자 교육 내용

- 제도 일반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을 공통으로 교육하고 DB형과 DC형에 따라 지정된 내용 교육 실시
- 교육 내용은 전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으며 금융투자 관련 내용은 상대적으로 부족

퇴직연금제도별 가입자 교육 내용

제도 일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 급여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IRP 이전 마. 연금/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 및 폐지 하는 경우 그 처리 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 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가. 최근 3년간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 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 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 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일반 IRP : 부담금 납입 한도, 급여 종류별 수급 요건 및 중도인출, 제도 일반(마, 사), DC형(다, 라)

기업형 IRP(10인 미만 사업장): 제도 일반 전체, DC형 전체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방법

-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2항에 의해 사용자와 가입자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가입자 교육의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입자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교육의 제반사항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와 협의할 수 있음

퇴직연금제도별 가입자 교육 방법

제도 일반에 관한 사항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할 것 - 다만,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 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나. 직원 연수·조회·회의·강의 등의 대면 교육을 실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라.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나. 직원 연수·조회·회의·강의 등의 대면 교육을 실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 궁극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대상자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 6월 말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619만 명이며, 전체 상용근로자(1,157만 명) 대비 퇴직연금 가입률은 53.5%
-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수는 31만 7,189개 소이며, 전체 사업장(186.4만여 개) 대비 도입률은 17.0%

사업장 규모별 전체 상용근로자 수

구 분	10인 미만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합 계
상용근로자 수	3,224,317	2,464,541	2,273,170	1,566,199	483,372	1,556,731	11,568,330

자료 : 고용노동부 '2014년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구 분	10인 미만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합 계
도입 사업체 수	191,821	83,890	30,564	8,299	1,258	1,357	317,189
미도입 사업체 수	1,394,758	118,159	29,406	3,760	275	25	1,546,383
전체 사업체 수	1,586,579	202,049	59,970	12,059	1,533	1,382	1,863,572
도입비율	12.1%	41.5%	51.0%	68.8%	82.1%	98.2%	17.0%

주 1. 전체 사업체 수는 고용노동부 통계 DB(2013년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2. 도입 사업체 수는 2016년 6월 말 현재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 DB형제도 및 원리금보장상품 선호에 치우친 적립금 운용

- DC형과 증권업권에서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 상대적으로 높아

제도유형별 적립금액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DB		DC		기업형IRP		개인형IRP		합 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원리금보장형	838,478	97.2	240,164	78.8	6,626	86.9	81,934	70.2	1,167,202	90.4
실적배당형	17,307	2.0	56,847	18.6	697	9.2	20,981	18.0	95,833	7.4
기 타 ^{주)}	6,843	0.8	7,819	2.6	298	3.9	13,772	11.8	28,732	2.2
합 계	862,629	100.0	304,830	100.0	7,622	100.0	116,687	100.0	1,291,768	100.0

주)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현금성 자산, MMF 등)

금융권역별 적립금액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근로복지공단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원리금보장형	586,316	90.7	302,227	94.6	84,760	98.5	184,184	80.0	9,714	98.2
실적배당형	38,261	5.9	16,463	5.2	1,248	1.5	39,760	17.3	101	1.0
기 타 ^{주)}	21,635	3.3	688	0.2	39	0.0	6,296	2.7	75	0.8
합 계	646,212	100.0	319,377	100.0	86,047	100.0	230,241	100.0	9,891	100.0

주)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현금성 자산, MMF 등)

■ 증권업권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시 자산 구성이 상대적으로 양호

- 증권업권 상위 사업자의 경우 DC형의 적립금 자산 중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50%를 초과

증권업권 주요 사업자 퇴직연금 적립금 구성 현황

(2016년 8월 기준, 단위 : 억 원)

구 분	증권업권		M사		S사		K사(2016년 9월 기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DB	비중)	(DC	비중)	(IRP	비중)	
원리금 보장형 상품	예금	42,143	18%	4,488	10%	2,260	11%	2,479	11%	2,174	16%	275	4%	30	1%
	GIC	59,393	26%	7,842	17%	3,697	17%	1,330	6%	1,330	10%	0	0%	0	0%
	ELS, RP	81,599	35%	21,698	47%	3,925	19%	12,975	58%	9,296	69%	2,544	37%	1,135	49%
	기타 주2)	7,895	3%	694	1%	3,698	17%	368	2%	15	0%	155	2%	199	9%
	소계	191,030	82%	34,722	75%	13,579	64%	17,152	76%	12,814	96%	2,974	43%	1,364	59%
실적배당형 상품	41,296	18%	11,721	25%	7,584	36%	5,378	24%	565	4%	3,863	57%	950	41%	
합 계	232,326		46,443		21,164		22,531		13,379		6,837		2,314		

주 1. 각 사업자 업무보고서 가집계
 주 2. 기타는 국공채, MMF 등(S사 기타에는 물가연동국채 1,782억 포함)

< 문제점 >

1. 사용자

- 가입자 교육에 대한 책임감 부족
- 사업자 위탁 계약으로 면책 인식

2. 가입자

-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 및 관심 부족
- 제도 및 금융상품 관련 용어의 어려움
- 위험 회피 심리로 안전자산 선호

3. 사업자

- 교육 위탁 수행에 따른 수동적 태도
- 가입자 교육 업무를 비용으로 인식

4. 감독기관

- 가입자 교육에 대한 장기 비전 부재

< 부작용 >

1. 사용자

- 대면 교육 기피, 서면 교육 선호
- 대면 교육 시간 축소

2. 가입자

- 나의 가입 제도는? DB? DC?
- 금융 지식 및 역량 태부족
- 원리금 상품 고집으로 저수익 고착화

3. 사업자

- 가입자 교육 콘텐츠 개발 노력 부족
- 가입자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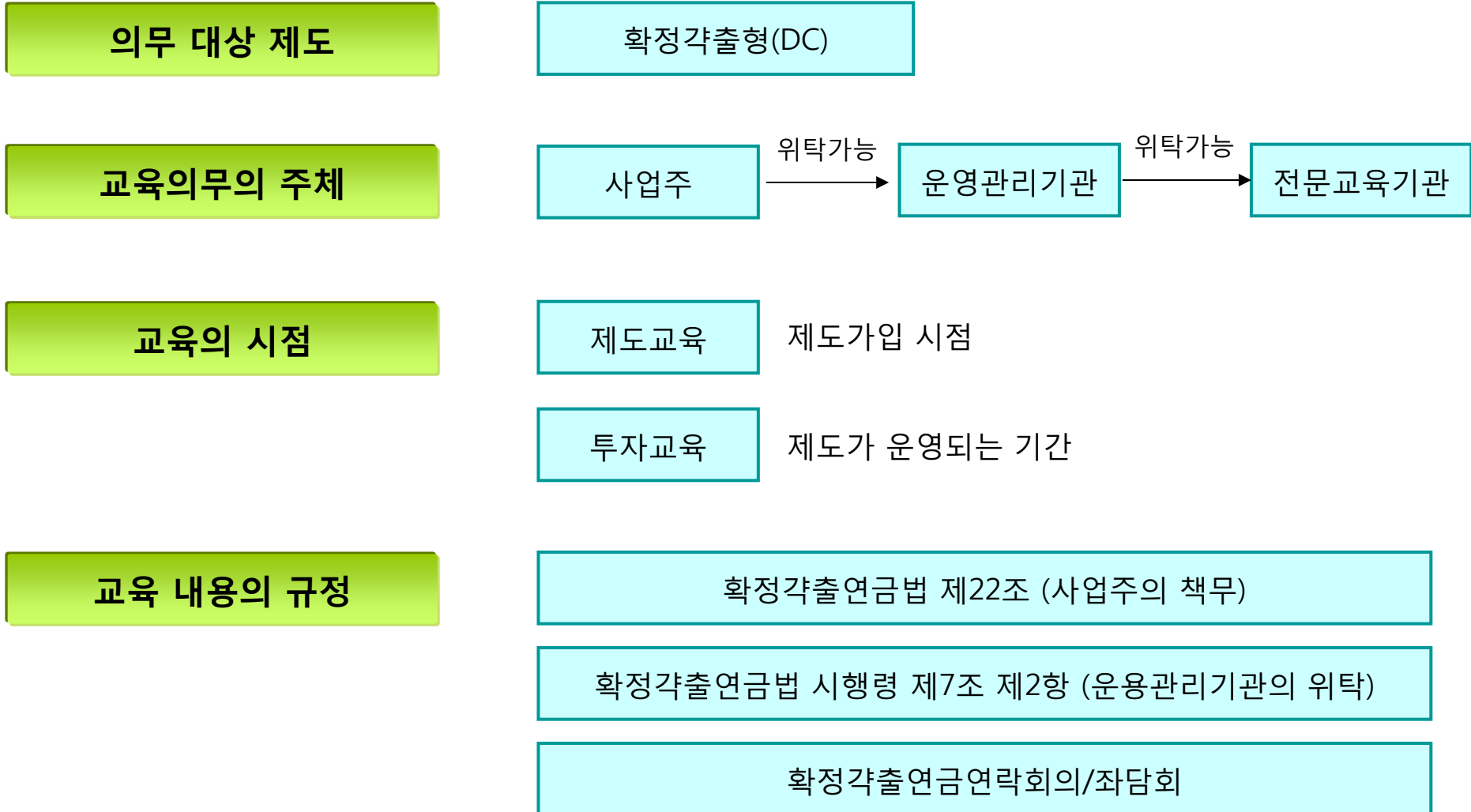
4. 감독기관

- 가입자 교육 이수 확인 검사만 치중

Ⅱ. 가입자 교육 개선 방향

주요 선진국의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국 가	주요 특징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성 산하의 기관에서 연금 관련 교육 홍보 지원 • 콜센터 운영, 책자 발간, 광고 • 별도의 홈페이지 관리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연금부의 지원을 받는 연금상담 서비스 기관 TPAS (The Pension Advisory Service)가 연금교육을 주도 •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모든 연금제도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 • 연금고충처리위원회라는 기관을 통해 민원과 쟁의를 조정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주, 복리후생담당자 중심의 교육 • 노동성에서 관련 책자와 브로슈어를 발행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C형에만 가입자교육을 규정 • 가입자교육을 '가입 시점 제도교육'과 '운용 단계의 투자 교육'으로 구분 • 사업자들은 처음 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스타터 킷' 이라는 다양한 형태의 가입자교육 자료를 제공(사용자가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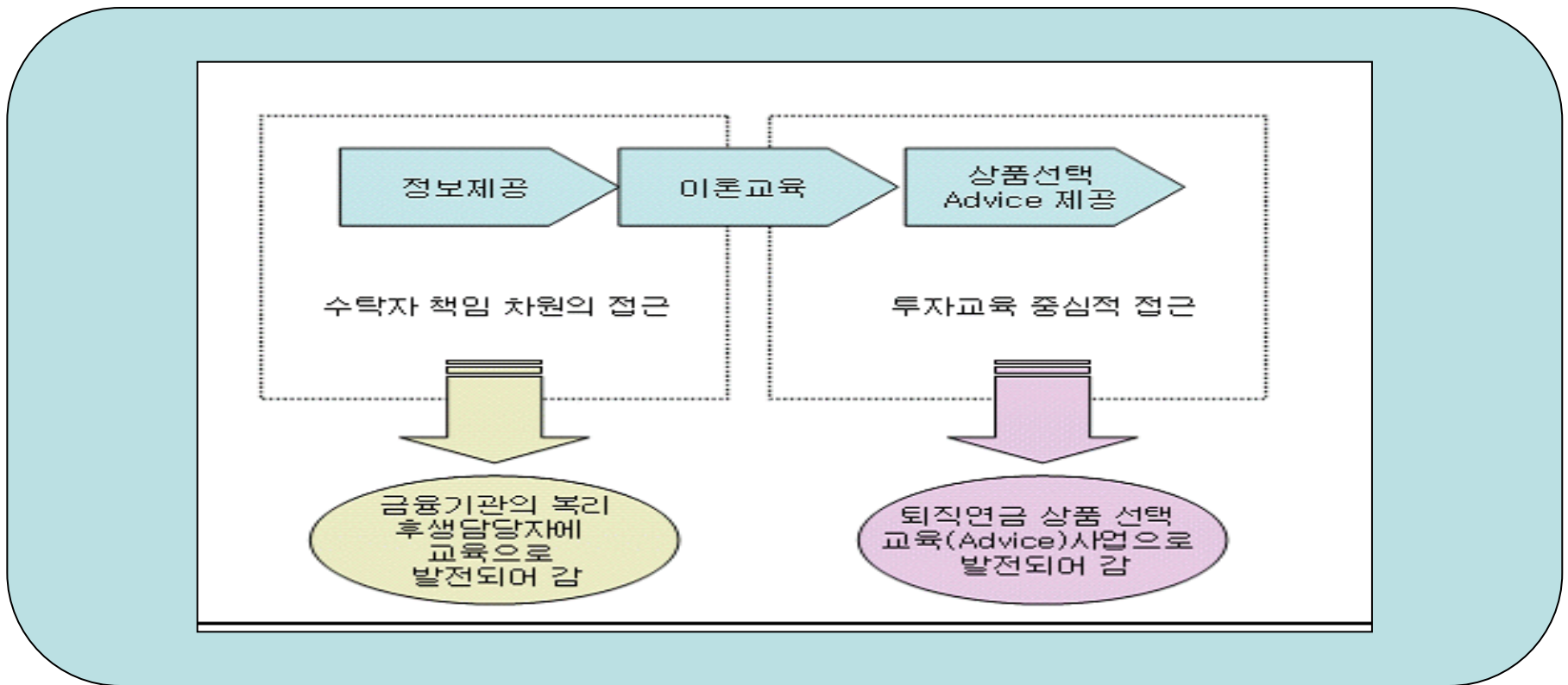
■ 일본 퇴직연금 제도 투자교육의 위상

- 퇴직연금 투자 교육은 기업(사업주)의 가장 중요한 책임 항목임
- 일본은 DB제도가 정착된 상황에서 DC제도를 도입
- 사업주의 입장에서 DC제도는 DB의 운용 리스크를 DC제도 전환을 근로자들에게 전가하는 효과를 얻음
- 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에게 투자 교육을 제공



자료: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고용노동부 용역. 김근수, 방하남, 서창환, 김성일

- 미국은 퇴직연금 교육이 의무사항이 아님
- 노동부의 EBSA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가 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자료 제공
- 다양한 NGO(ASEC, AARP)에서 노후를 대비한 금융설계 등 교육 수행



자료: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고용노동부 용역. 김근수, 방하남, 서창환, 김성일

■ 대면 교육과 서면 교육 병행: 시간 제약에 따른 효율성 제고 모색

- 가입자 교육 사항 중 제도 이해 부문은 서면 교육 자료 배포로 대체
- 은퇴설계 중요성, 연금자산 운용, 은퇴자산 관리 등 금융투자 부문에 집중

■ 올바른 금융 태도 함양에 중점 교육: 충격 요법 사용

- DC형 가입자 대상으로 적립금 운용 및 금융투자의 성공 및 실패 사례 제시(tip: 성공은 가입자 중심, 실패는 교육자 중심)
- 교육 대상 사업장 가입자 중 우수 운용 사례 칭찬을 통해 동료들 동기 부여
- 장기투자, 복리/단리효과 비교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

■ '강의식 교육 + 정보 및 지식 제공 + 개별 상담' 복합 교육 진행

- 강의식 교육: 난이도와 중요도가 큰 내용 전달 시 집중 교육
- 정보/지식 제공: 퇴직연금 제도 이해, 운용현황보고서(부담금 납입 현황, 금융상품 투자 내역, 수익률 등 기재) 제공
- 개별 상담: 강의식 교육 후 '상담 부스' 설치해 1대1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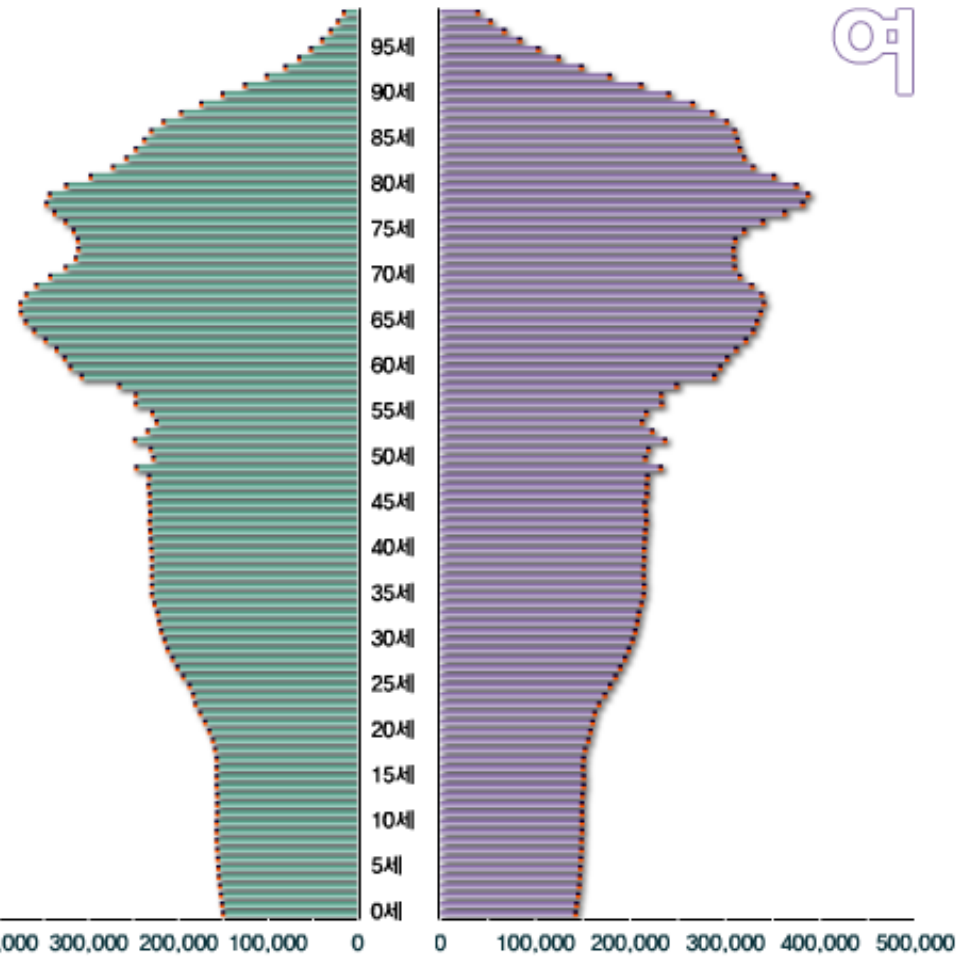
은퇴설계 중요성 - 저출산 2060년 고령화 위험

선택한 가정

▶ 피라미드 도움말

나이(세)	남자(명)
95세 이상	148,269
90 - 94	512,651
85 - 89	1,043,430
80 - 84	1,387,526
75 - 79	1,657,375
70 - 74	1,592,416
65 - 69	1,834,825
60 - 64	1,677,470
55 - 59	1,283,235
50 - 54	1,152,691
45 - 49	1,163,270
40 - 44	1,142,632
35 - 39	1,134,928
30 - 34	1,092,197
25 - 29	988,302
20 - 24	862,826
15 - 19	779,873
10 - 14	771,903
5 - 9	770,175
0 - 4	750,602

남



여

나이(세)	여자(명)
95세 이상	334,600
90 - 94	892,213
85 - 89	1,465,023
80 - 84	1,679,894
75 - 79	1,779,851
70 - 74	1,542,363
65 - 69	1,666,825
60 - 64	1,548,357
55 - 59	1,208,913
50 - 54	1,095,532
45 - 49	1,088,810
40 - 44	1,067,956
35 - 39	1,060,312
30 - 34	1,025,175
25 - 29	933,932
20 - 24	809,627
15 - 19	749,137
10 - 14	735,971
5 - 9	730,658
0 - 4	713,347

년도선택 |

 << < > >>

가입자 대면 교육 실제 사례



전국

시·도

인구변동요인 설정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제이동)에 대한 장래 수준을 설정하여 미래 인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가정을 조합한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세요.

인구추계란?

용어설명보기

출생

Step1



합계출산율
1.42 명

사망

Step2



기대수명
남자 : 86.59 세
여자 : 90.30 세

국제이동

Step3



천명당
이동자수
0.53 명

초기화

결과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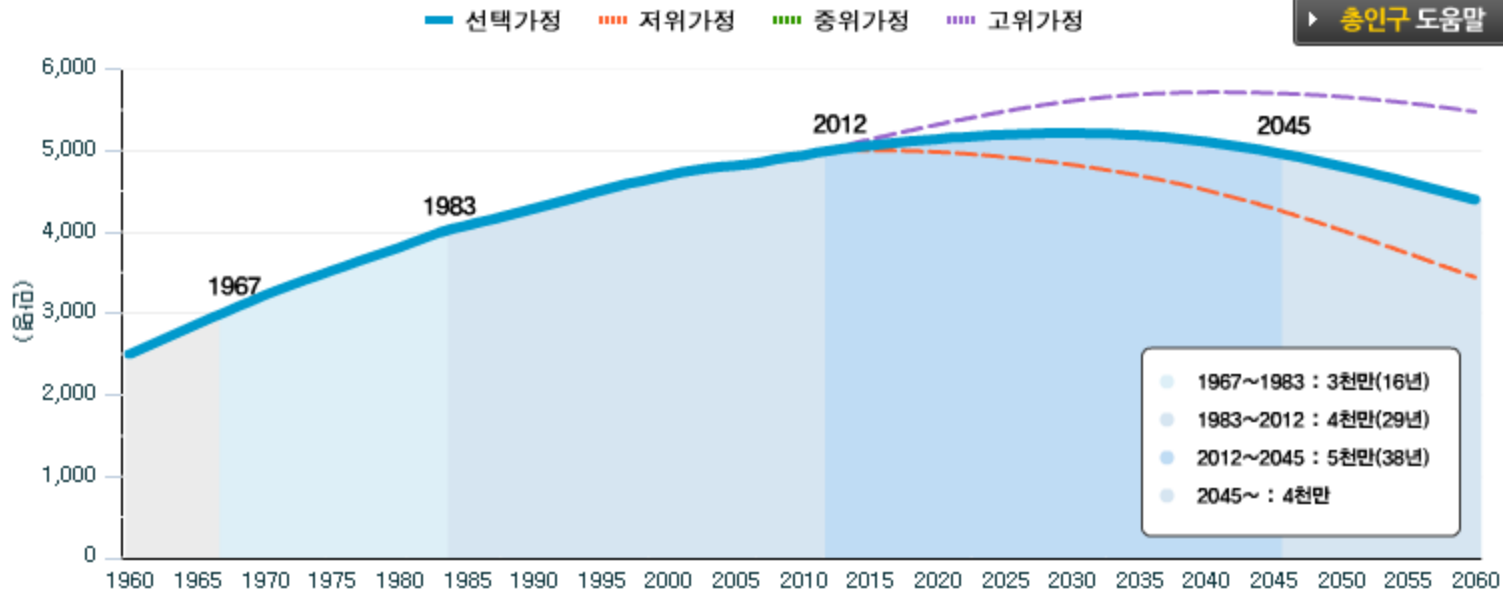
피라미드

총인구

연령별인구

부양비 · 중위연령

출생:중위, 사망:중위, 국제이동:중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총인구

출생 · 사망

인구이동

엑셀저장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인구(7월1일 기준)		49,410,366	51,435,495	52,160,065	51,091,352	48,121,275	43,959,375
출 생(명)	1년	486,000	451,000	409,000	325,000	306,000	285,000
	1시간	55	51	47	37	35	33
사 망(명)	1년	261,000	356,000	453,000	576,000	718,000	751,000
	1시간	30	41	52	66	82	86
인구이동(명)	1년	145,000	36,000	29,000	32,000	31,000	23,000
	1시간	17	4	3	4	4	3

■ OECD, 금융교육의 중요성 강조

- 주요 국가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연금 가입자들의 금융지식 수준이 사실상 '금융무지'에 가깝다는 것
- 대다수 개인들이 금융지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산운용 능력에 대해 실제보다 과신하고 있다는 것
- 금융지식의 정도와 금융행동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상관관계 존재

■ 금융교육 실시의 효과

- 가입자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지식의 향상이 기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
 - 기업의 금융교육 실시에 근로자들이 높은 신뢰도를 부여하고, 기업에 대해 더 우호적인 시각 확산
 - 근로자의 금융지식이 높을수록 결근율이 낮고 금융위기 발생 시 개인적인 시간 소비가 적었으며 직무평가에도 우수

■ OECD, 금융교육 가이드라인 제시

- 1) 주요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서로 일관되며 보다 투명하게 시행되어야 함
- 2) 은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해 촉진 및 장기 저축에 대한 필요성 증진과 투자에 대한 이해, 사업자의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3) 신중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바탕으로 경제적 성장과 복지를 제고시키는 수단으로 평생 교육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



금융교육이란?

1. 금융 상품과 개념에 대한 이해력 향상
2.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인식 및 정보 활용
3. 금융자산 증대를 위한 기술 확보 및 자신감 제고



정보 습득, 자문, 객관적 도움

Why?



■ 가입자 교육을 금융교육 중심으로 재편

- 현재 교육 내용: '퇴직연금 제도 이해 + 은퇴설계/자산관리'
⇒ 가입 시점 제도교육 + 운용단계 금융투자교육 확충

■ '대면 교육 중심 + 서면 교육 보완' 형식으로 제도 개편 필요

■ 연금교육 포털 구축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활용: 표준 가입자 교육 자료 및 금융투자 콘텐츠 제공
- 퇴직연금협회(가칭) 설립 후 산하에 가입자교육센터 부설: 은행·보험·증권업권 교육 콘텐츠 축적

■ 퇴직연금 교육 전문가 양성

- 2020년대 퇴직연금 일원화 시대에 대비해 연금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자격증 제도 도입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유료화

- 교육 수수료 부담을 통해 사용자의 책임감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감사합니다